

제3차 상법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2026. 02. 27.

I. Executive Summary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3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 제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①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문화, ②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 ③ 자기주식 처분절차의 신주 발행 준용, ④ 주주통제 강화에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은 더 이상 경영권 방어 또는 전략적 자산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한 일시적 자본조정 수단'으로 구조가 재정의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시행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및 자본시장법령상 공시의무 강화와 결합되면서,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은 이제 단순한 재무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사회 책임 리스크가 수반되는 거버넌스 사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보유 자기주식 처리 계획을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 전략 및 자본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개정의 정책적 배경과 규제 방향성

그간 국내 기업 실무에서는 자기주식을 회계상 자본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면서도,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전략적 자산처럼 활용해 온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 제3자 처분을 통한 우호지분 형성
- 교환사채(EB) 발행
- 합병·분할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수단
- 지배주주 지분을 관리 목적 활용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활용 방식이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주주권 보호 강화 흐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투자자의 감시 강화 환경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규율 구조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주요 개정 내용 및 실무적 시사점

1.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문화(상법 제341조의3 등)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에는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명문화하고,

- 자기주식 담보 제공 금지
- 자기주식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
-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을 규정하여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적 영향

- EB 발행 등 기존 자금조달 구조의 활용 제한
- 자기주식 기반 구조적 딜 설계 어려움 증가
- 전략적 재무 유연성 감소

향후 자기주식을 활용한 구조화 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은 대체 금융수단(전환사채, 유상증자, 구조조정 방식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상법 제341조의4 등)

(1) 기본 구조

- 신규 취득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 기존 보유 자기주식: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
- 상장회사의 경우 주총 승인 없는 미소각 시 과태료 부과

참고로 신탁 취득의 경우에도 신탁업자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계산되도록 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였습니다.

(2) 예외적 보유·처분 허용 사유

- 모든 주주에 대한 균등 처분
-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 우리사주제도
- 포괄적 교환·이전·합병
-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단, 반드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 이사 전원 서명
- 매 회계연도 주주총회 보통결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사회 책임 리스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화된 현행 체계 하에서는, 자기주식 활용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형사상 배임 논란
- 주주대표소송 리스크

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신주발행 준용(상법 제342조)

기존 판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으나, 개정 상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화

-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 처분
- 예외적 제3자 처분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
-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무효의 소 규정 준용

실무적 파급

- 경영권 분쟁 시 백기사 전략의 활용 범위 대폭 축소
- 제3자 대상 전략적 자기주식 처분 시 소송 리스크 증가
- 딜 구조 설계 단계에서 사전 법률검토 필수화

특히 M&A 또는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 중인 기업은, 자기주식을 활용한 방어전략의 법적 안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IV.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른 공시의무 강화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신주발행 준용(상법 제342조)

2025. 12. 30.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은 자기주식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 보유 시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모두 첨부
- 처리계획 대비 실제 이행현황 비교 공시
- 반복 위반 시 가중 제재

이는 자기주식 운용에 대한 시장 감시를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향후 자기주식 관련 의사결정은 공시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설명 가능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V. 기업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 단기 대응 (시행 직후)

- 보유 자기주식 현황 전수 점검
- 소각 일정 수립
- 예외 보유 필요성 검토
- 외국인 지분제한 업종 해당 여부 확인

2. 중기 대응

- 정관 개정 필요성 검토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표준안 마련
- 이사회 의사록 작성 기준 강화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3. 장기 전략

- 자본정책 재설계 (소각 중심 구조 전환)
- 경영권 방어 전략 대체 수단 모색
- ESG·거버넌스 공시 체계 정비
- 이사회 책임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 구축

VI. 결론

제3차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 제도를 '경영 재량 영역'에서 '주주통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주식 보유는 전략적 선택지가 아니라, 법적·공시적·책임적 통제를 전제로 한 제한적 수단입니다. 기업은 단순한 형식적 준수를 넘어, 자기주식 활용이 전체 주주 이익 및 기업가치 제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기적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본시장 규율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별 사안 대응차원이 아닌, 자본정책·거버넌스 전략 재정비의 계기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재웅 구성원변호사

T. 02-3479-5762

E. jaewoong.choi@barunlaw.co

박해나 소속변호사

T. 02-3479-7874

E. haena.park@barunlaw.com